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6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조정훈・인요한・최수진

유상범 · 김대식 · 김용태

서지영 · 이인선 · 정성국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법률 제 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 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반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 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 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반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장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에 따른다. 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수 있다.

<삭 제>

<삭 제>